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본인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과 대출거래를 함께 있어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은행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서명/인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추가약정서(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기업대출**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라는점에서 생계유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계대출 상품과 구분됩니다.
- 은행은 대출 가용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신용 및 각종 담보에 기반하여 대출을 제공하며, 부동산 이외에도 동산·채권 등 다양한 범위의 담보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은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구분됩니다.
 - **(운전자금대출)**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시설자금대출)** 기업설비의 취득·신설·증설·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Q1. 기업대출의 자금용도별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 원재료 구입, 종업원 급여·상여금	▶ 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자금
▶ 차입금 상환자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인수자금(회사 인수를 위한 지분인수, 지산·부채 인수, 합병 등) ▶ 매입자금·임차보증금 등 ▶ 기계장치의 구입, 설치, 자가제작자금

⇒ **Q2. 기업대출의 자금용도 외 목적으로의 활용이 가능한가요?**

- 기업대출자금은 자금용도의 목적범위 내로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대출자금의 유용 시 해당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3. 모든 기업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기업여신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정책자금 등 은행에서 금리를 산정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9.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귀 사와 상담한 **기업금융담당자 (Relationship Manager)** 또는 **상품판매시 상담직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02-2004-**)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s://fcsc.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징

· 상품명 : <input type="checkbox"/> 일반자금대출 <input type="checkbox"/> 당좌대출	· 대출기간 : 취급 후 개월
· 대출신청금액 : _____ 원	· 채권보전 : <input type="checkbox"/> 담보, <input type="checkbox"/> 신용(<input type="checkbox"/> 보증, <input type="checkbox"/> 무보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적용예정금리 (보증료율) : _____ % (금리적용방식 : <input type="checkbox"/> 변동, <input type="checkbox"/> 고정)	
· 예상 실질유효금리 : _____ %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 대출금리 변동 등으로 상품설명 단계에서 고객님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체결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금액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산한 총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은행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도대출인 경우 확인사항

- 약정한도미사용 수수료 적용여부 : 적용 해당사항 없음
- 한도대출 약정후 한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실질유효금리 : _____ %

2. 거래 구분

- 개별거래 : 약정액 범위 내에서 일괄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
- 한도거래 : 약정한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개별거래에 비해 상품마다 별도 가산금리가 부과되어 금리수준이 높음)

3. 수수료 등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율) : 중도상환대출금액 × (_____)%, 원
 ↳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약정한도수수료(율) : (_____)%, 원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율) : (_____)%, 원
- 신용조사수수료 : (_____) 원

- 근저당권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_____) 원

↳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 X 일별 채권할인율(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상세 금액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_____) 원

↳ 말소(감액)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보통 건당 50,000 원)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_____) 원

↳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 주소지,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인지세 : (_____) 원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여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기타수수료 : 항목 (_____) 금액 (_____)%, 원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항목 (_____) 금액 (_____) 원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분담합니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금융소비자의 권리

5.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 일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 3 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 개월 내에 2 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 30 조 2).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 17 조제 3 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 18 조제 2 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 19 조제 1 항·제 3 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 20 조제 1 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 21 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1 년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실질유효금리

- 고객이 부담할 대출이자와 대출취급시 은행이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 등 비용을 합산하여 대출금리(연율)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수수료 등 비용 중 법령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인자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실비 성격의 일부 수수료는 실질유효이자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상 실질유효금리 계산에 합산된 내역

- 적용예정금리 : () %
- 한도약정수수료 : () 원
- 취급수수료 : () 원
- 기한연기수수료 : () 원
- 한도미사용수수료(최고) : () %

☞ 한도대출 약정후 실제 사용정도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본 상품설명서에서는 한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적용될 최고 약정한도미사용 수수료를 감안한 실질유효금리 계산 결과를 참고목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기타 (구체적으로 열거)

- () : () %. 원

6.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D 연동금리의 경우 3 개월마다 시중의 CD 유통수익률 (91 일물)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 요인

-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목표이익률(마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대출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은행은 COFIX, 금융채,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 또는 내부조달금리로 산출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 신용등급변경,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 유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지역배상금률(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 : 최고 연 3%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7%로 합니다.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대출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만기 일시상환방식 : 대출원금을 대출 만기일에 전부상환하며,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 원리금 상환금액 부담은 가장 적으나, 대출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총 납부해야하는 이자비용이 가장 큽니다.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록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방식 : 여신개시일로부터 익월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 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 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고, 거치기간이 중요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한도거래대출 내에서 자유로이 상환하며, 대출 만기일에 전액 상환 (이자원가시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익월부터 이자가 부과됨)
- 기타 상환방법은 여시거래약정서 참조

8.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근질권) 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9.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연체이자부담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 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 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대출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일부 발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란?

- (1)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 1 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등

※ 기한의 이익 실시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를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 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정보등'의 등록

- 해당신용공여의 5 만원, 10 일 이상 연체정보는 신용공여보고서에 보고됩니다. 대출원금, 이자 등을 3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 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등 신용도 판단정보가 신용정보분석원에 등록됩니다.

-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등' 정보등록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연체정보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등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이자·지연배상금 및 비용(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 신용도,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긴 경우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한도대출),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정책자금 등 기타 협약대출 등)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대출의 제한

-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납입방법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납입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 참조

□ 은행·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장계란 채무자와 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은행은 대출 등 채무의 변제기에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대출 등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대출 등 채무를, 그 대출 등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상계한 예금 등의 통장 등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대출계약 등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등)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금용도와 유용시 주의사항

- 자금용도와 유용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금용도와 유용 시 유용 해당금액은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의 거래상대방

- 법인 등의 경우 대표이사가 여신거래를 하나,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대표자격이 확인된 대표이사에 한합니다.

□ 기업대출의 유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 여신거래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은 여신거래 유지 및 간접 등을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 및 매출관련 자료 등을 매년 1회 이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의 지속가능 조건

- 기업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 폐업 등 존속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여신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

- 법인에 대한 기업여신 등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는 가능하나, 실질경영자나 관계기업이 아닌 제 3 자의 연대입보는 불가합니다